

의안번호	제 235 호
의 결 연 월 일	2008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08년 5월 7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5
----------	-----

제출연월일 : 2008년 5 월 7 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이유

- 학교급식에 지역 및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한 의무 규정이 WTO협정 위배 사유로 대법원에 제소, 조례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WTO협정에 부합되도록 개정
- 학교급식법 전부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과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지원 근거 마련

### 2. 주요내용

- 학교급식, 급식경비, 우수 식재료의 정의 (안 제2조)
- 학교급식 지원대상, 방법, 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안 제6조)
-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7조 ~ 안 제8조)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안 제9조)

### 3. 조례안 전문 : 별첨

### 4. 관계법령발취 : 별첨

## 충청북도조례 제 호

###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충청북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지역의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사용과 급식시설·설비의 개선을 위한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대상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시설·설비비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이력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 나.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
  - 다.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일정등급(「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 라.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원양산 포함)
  - 마.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 인증품
  - 바. 생산자단체 또는 자치단체가 인증한 농·축·수산물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급식재료로 사용되는 우수 식재료의 공급관리방안
2. 학교급식 지원 예산에 대한 기관별 재정분담방안
3.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감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학교급식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지원방법)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지원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식경비 중 일부를 예산범위 안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급식경비의 지원규모와 내역 및 기관별 재정분담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유치원 및 초·중학교의 장은 지역교육청을 경유하여 교육감 및 관할 시장·군수에게,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장은 교육감 및 관할 시장·군수에게, 시설의 장은 관할 시장·군수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지원받고자 하는 급식경비 및 산출내역
5. 급식시행계획과 기타 필요사항

② 신청 서식, 절차, 시기, 신청 공고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1.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및 관련 실·국·본부장
2. 충청북도 교육청 관련 실·국장
3. 충청북도의회 추천 의원
4. 학부모단체 추천인
5. 농어업관련단체 추천인
6. 교원단체 추천인
7. 학교급식관련 종사자 대표
8. 시민단체 추천인
9. 그 밖에 관련 전문가 등

③ 위원장은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도의 급식지원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급식 지원계획
2.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재정분담방안
3. 시·군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지원방안
4. 우수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지원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9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① 도지사는 우수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학교급식법」제5조제4항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②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지원방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 제10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① 도지사는 학교급식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우수 식재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 ③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대상자가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④ 도지사는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학교급식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 및 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취**

**【학교급식법】**

**제5조 (학교급식위원회 등)**

- ③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 (경비부담 등)**

- ①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 ②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③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